#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55

발의연월일: 2020. 8. 21.

발 의 자: 박재호 · 전재수 · 최인호

김정호・허 영・한병도

정춘숙 · 김승남 · 이해식

김윤덕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,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, 국·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해양산업과 해양연관 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입주기업 또한 정책 만족도 가 높지 않은 등 해양기업의 유치를 통해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, 고용보조금 지급,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9조).
- 나.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 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23조의2 신설).
- 다.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(안 제23조의3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1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.

##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 제목 "(세제지원)"을 "(조세의 감면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지방자치단체는"을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"으로, "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"을 "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"으로, "지방세를"을 "국세 및 지방세를"로 한다.

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2(고용보조금 등의 지급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3조의3(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 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

설립한다.

-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연구
- 2.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
- 3.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동 촉진
- 4.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, 연구, 대외협력, 홍보사업
-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- ⑥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세제지원) 지방자치단체는	제19조(조세의 감면) 국가 및 지
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	
_	<u> 방자치단체는</u>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조례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지방세를</u>	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감면할 수 있다.	<u>국세</u>
	<u>및 지방세를</u>
<u> &lt;신 설&gt;</u>	제23조의2(고용보조금 등의 지급)
	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
	주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
	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
	여 입주기업에 대하여 고용보
	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
	주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
	위하여 제도적·행정적 지원을
	<u>할 수 있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
	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
	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
	한다.
<신 설>	제23조의3(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
	센터의 설립 등) ① 해양수산

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(이 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립 한다.

-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개발및 연구
- 2.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
- 3.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활 동 촉진
- 4.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위한 투자유치, 연구, 대외협력, 홍보 사업
- 5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

<u>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</u> <u>다.</u>
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하 여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- ⑥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 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.